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 과태료 상향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26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 과태료 상향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5. 3. 18.
3. 회 부 일: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55조).

Ⅲ. 검토의견

1.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 과태료 상향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조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1항제2호 후단 신설, 안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및 동조 제2항제2호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후단 신설>	2. ----- ----- ----- . 이 경우 <u>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u>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u> <u>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u>

3. (생 략) ② ~ ⑦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u>제출하여야 한다.</u>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 -----.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관계자·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현장조사·감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¹⁾.

-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출 기간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대상의 협조 의무 사항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점, 현행법상 자료 미제출·조사 거부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현행법상 관계 기관의 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1호)²⁾, 1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한 자가 시·군·구청장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1항제2호)³⁾가 이에 해당함.

[자료 미제출·조사 거부 등에 대한 현행 과태료 규정]

의무사항 등	위반행위	과태료
관계 기관의 장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를 것 (법 제18조의13제2항)	자료 미제출 (법 제55조제1항제1호)	1,000만원 이하
시·군·구청장은 (1인당 총투표금액 20만원 초과 판매 금지를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음 (법 제30조의2제2항)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조사 거부·방해·기피 (법 제55조제1항제2호)	
조사 대상 당사자·관계자·관계 기관 등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금지 (법 제18조의5제2항)	조사 거부·방해·기피 (법 제55조제2항제2호)	500만원 이하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자료제공 시 사실 축소·은폐 금지 (법 제18조의6제2항)	고의적 사실 축소·은폐 (법 제55조제2항제4호)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6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장부·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첫째, 제출기한(안 제18조의5제1항제2호 후단)과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기한이 착수일로부터 90일~120일인바⁴⁾, 기한 내 조사 완료를 위해 제출기한을 축소하는 방안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 현행 | 개정안 | 문체부 수정안 |
|---|--|---|
|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생략) |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개정안과 같음) |
|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u><후단 신설></u> | 2. -----

<u>. 이 경우</u>
<u>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u>
<u>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u>
<u>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90</u>
<u>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u>
<u>출하여야 한다.</u> | 2. -----

<u>. -----</u>

<u>14</u>
<u>일</u> -----

-----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 둘째, 과태료 상향(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2호)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이래로 과태료 부과 사례는 2025년 2월 단 1건에 불과한바⁶⁾,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비협조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상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자료 제공을 하는 자가 사실을 축소·은폐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법 제55조제2항제4호)⁷⁾, ‘사실 축소·은폐’와 개정안에 따른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의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5

및 사실조화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6) <전체 과태료 부과 현황>

연도	부과 건수	대상	부과금액	부과일
2025	1건	전 대한체육회 회장, 사무총장	각 5백만원	2025. 2. 10. 사전통지서 발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제55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